

SAMC | LAW REVISION

1. 감염병 대응 강화 위한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19가 연일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환자의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등 3개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Read More](#)

2.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기준' 신설 감경 사유도 대폭 확대

관세청은 수출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고인이 신청정정(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을 할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하는 등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입세액 정산제에 따른 세액 정정, 자율 정정기간 중 정정 신청 등 감경 사유를 대폭 확대한 '신고서 정정 사유별 오류점수 면제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13일 입안예고했다.

[Read More](#)

3.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 물품,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 신규 도입

재래식 무기로 전용(轉用)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도 상황허가(Catch all)를 받아야 한다. 또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받은 경우 자가판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 파괴무기와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아야 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정부, 6월까지 '수입 마스크·MB필터' 관세 면제

정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pm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 같은 무관세 조치는 3월 1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Read More](#)

2. 아르헨티나, 통관까지 90일 내 마쳐야 수입규제 강화

아르헨티나가 수입 승인기한을 72시간에서 60일로 늘리고, 수입 가능기한은 180일에서 90일 단축하는 등 수입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여, 현지 수입상과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친기업, 개방 정책을 표방한 마크리 前 대통령의 주도하에 수입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후 수입 가능기한이 단축되며, 다시 수입절차가 엄격해졌다.

[Read More](#)

3. '수출채권'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해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향후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3월 1일부터 對인니 수출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와 관련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여전히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EODES) 개통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는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온 EODES가 개통돼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월 26일 밝혔다..

[Read More](#)

2. 인도, 「관세법」 개정 4월 1일부터 원산지 검증 강화

오는 4월 1일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對인도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자가 FTA 특혜 적용을 신청했을 때 관세당국이 관세율 특혜요건인 원산지 기준 충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세청은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이 통관상 애로사항을 겪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Read More](#)

3. '한미 FTA 때문?' 지난해 對美 무역흑자 8년만에 최저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5년 258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미 FTA 발효 8년차 교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분야 대미 수출은 733억4400만달러, 수입은 618억7900만달러로 전년 보다 각각 0.9%, 5.1%씩 증가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14억6500만달러로 집계됐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사항 적용도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공통기준의 제조기준이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를 금속제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에는 분쇄 이후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 2019년 9월 23일에 개정된 내용이 2020년 4월 1일 선적분부터 적용이 된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해외제조업소로부터 쇠가루 제거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기존 수입하던 제품이라 하더라도 최초정밀시 금속성 이물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품목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 처음 수입 시 기준규격 강화됨에 따라 금속성 이물에 대한 검사가 진행 된다.

[Read More](#)

2. 부적합 없는 해외제조업소, 선별적 검사명령 대상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훈제 건조어육과 중국산 집성목, 인도네시아산 스낵과자의 사이클라메이트를 모든 업소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검사명령 기간 부적합 이력이 있던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검사명령을 유지하고 부적합이력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제외하였다. 또한 천연향신료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운영해온 인도, 방글라데시, 스페인, 파키스탄은 부적합율이 높아 지속적으로 검사명령이 유지되지만 검사지정 일을 설정하여 1년마다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하였다.

[Read More](#)

3. 「한국-영국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한시적 유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2020.01.31에 공식 탈퇴하였으나 2020.12.31까지 전환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의 효력이 전환기간 종료일 까지 선적한 물량에 대해서는 한국과 영국 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